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. 6. 9 선고 2015가단234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5. 26.

판결 선고 2015. 6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174m² 및 D 대 154m² 양 지상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정재우

별지